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6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산37-1	산37-1	임	4,066	147	-	이영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미리아파트 215-404				분할
			산37-7	임	125	-	125	이영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훼미리아파트 215-404				
7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산38-1	산38-1	임	1,970	1,970	1,970	정화섭	충북 괴산군 괴사읍 임격정로 108	진천농 업 협동조 합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99	근저 당권 지상 권	변경 없음
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산40-1	산40-1	임	214	214	-	이진표	청주시 운천동 813-2 홍덕빌라 나동 302호				분할
			산40-6	임	176	-	176	이진표	청주시 운천동 813-2 홍덕빌라 나동 302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2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11호, 2017.07.1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4호 중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5호" 및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46호"를 각각 "국립환경과학원고시"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 별표 4의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를 "제3조의2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9조제2항 별표 4의"를 "제3조의2 별표 1의2"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측된 노출수준이 예측무영향농도 또는 무영향수준(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최소영향수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기존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리고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3호 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3호 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1조제6호 중 “별표 7의 3.4.”를 “별표 7의 제3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5호 중 “별표 7의 3.5.”를 “별표 7의 제3호 마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별표 7의 3.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을 “별표 7의 제3호 자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별표 7의 3.7.”을 “별표 7의 제3호 사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9호 중 “별표 7의 3.6.”을 “별표 7의 제3호 바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6호 중 “별표 7의 4.1.”을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별표 7의 4.1.”을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6호 중 “별표 7의 4.1.”을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자료 평가는 본장 제1절 및 제2절에서 규정한 바에 의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제18조제2항 관련)

1.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녹는점/어는점	○ 녹는점이 -20℃ 미만인 물질
끓는점	○ 기체인 물질 ○ 300℃ 초과 온도에서 녹거나 끓기 전에 분해되는 고체 ○ 끓기 전에 분해되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밀도	○ 특정 용매에서만 안정하고, 용액의 밀도가 그 용매의 밀도와 비슷한 물질 ○ 기체인 물질
증기압	○ 녹는점이 300℃를 초과하는 물질 ○ 측정 한계 값 또는 공인된 계산방법에 의한 결과 값을 제출하는 경우로 녹는점이 200℃~300℃인 물질 ○ 고분자화합물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물용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 4, pH 7 및 pH 9에서 가수분해로 불안정한 물질(반감기가 12시간 미만) ○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물질 ○ 분석방법의 검출 한계까지 한계시험을 실시한 결과, 검출되지 않는 물질(물에서 극히 불용성인 경우)
입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체(분말, 과립 또는 섬유)가 아닌 형태로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되는 물질
옥탄올/물 분배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물 ○ 고분자화합물 ○ log P 계산값과 상세한 계산방법을 제출하는 경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 중 분해되는 물질, 또는 - 표면 활성이 높은 물질, 또는 -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 물이나 n-옥탄올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해리상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수분해로 불안정한 물질(반감기가 12시간 미만) ○ 물에서 쉽게 산화되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인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 또는 자연발화성 고체 ○ 공기와 접촉했을 때 자연 발화성 물질 ○ 고분자화합물
폭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자 내에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없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고 산소를 포함하며, 계산된 산소수지가 -200미만인 물질 ○ 폭발성과 관련 있는 화학그룹이 있지만 발열 분해 에너지가 500J/g 미만이며, 발열 분해의 개시가 500℃ 미만인 유기물질 또는 유기물질의 균일한 혼합물 ○ 무기 산화성물질의 농도가 다음과 같은 그 무기 산화성 물질과 유기물질의 혼합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화성 물질이 구분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으로 15% 미만 - 산화성 물질이 구분 3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으로 30% 미만 ○ 유기물질의 발열 분해 에너지가 800J/g 미만인 경우. 단, 폭굉 전파 시험 및 폭굉 충격 감도 시험에 한함
산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성 물질 ○ 고인화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 가연성물질과 발열 반응하지 않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2. 인체 유해성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급성독성	급성경구독성	○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어 급성흡입독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물질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 입자의 크기가 100 μ m을 초과하는 물질. 단, 급성흡입독성 시험에 한함
자극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 급성경피독성 시험에서 고독성인 물질(구분 1 또는 구분 2) ○ 용량 2,000mg/kg 이상에서 수행된 급성경피독성 시험에서 피부 자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
	눈 자극성/부식성	○ 피부 부식성이나 심한 눈 손상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과민성	피부 과민성	○ 피부 부식성이나 피부 과민성으로 분류되는 물질 ○ 상온에서 인화성 물질(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경우)
유전독성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In vivo 세포 유전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발암성(구분 1)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 2)으로 알려진 물질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 제조·수입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복귀돌연변이시험 및 in vitro 염색체이상시험이 모두 음성인 물질 ○ 발암성(구분 1) 또는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 2)으로 알려진 물질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 복귀돌연변이시험, In vitro 염색체이상시험 및 in vivo 유전독성시험 결과 유전독성물질 분류(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1 및 2)를 위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
반복투여(노출)독성	반복투여독성 (28일)	○ 반복투여독성(90일) 또는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즉시 분해되고 분해산물에 대한 반복투여독성(28일) 등 충분한 자료가 있는 물질 ○ 엄격히 통제된 취급조건(예, 밀폐시스템)에서 제조·사용하는 등 유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인체 노출이 배제될 수 있는 물질
	반복투여독성(90일)	○ 반복투여독성(28일)에서 중대한 독성이 관찰된 28일 기준값을 적절한 불확실성 계수를 적용하여 90일값으로 외삽 적용한 경우 특정 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으로 분류되는 물질 ○ 즉시 분해되고 분해산물에 대한 반복투여독성(90일) 등 충분한 자료가 있는 물질 ○ 반응성이 없고 불용성이며, 흡입할 수 없고 흡수되지 않으며, 28일 한계시험에서 독성 증거가 없는 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생식·발달 독성	생식 및 발달(발생)독성 스크리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엄격히 통제된 취급조건(예, 밀폐시스템)에서 제조·사용하는 등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인체 노출이 배제될 수 있는 물질 ○ 최기형성 또는 2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최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이용가능한 모든 시험에서 독성증거가 없는 등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고 인체에 대한 노출을 무시할 수 있는 물질 ○ 태아 발달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생식독성물질(구분 1)
	2세대 생식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독성 발암물질(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이며, 발암성 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구분 1)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위해성관리대책이 이행되는 물질 ○ 이용가능한 모든 시험에서 독성증거가 없는 등 독성학적 활성도가 낮고 인체에 대한 노출을 무시할 수 있는 물질 ○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생식독성물질(구분 1)
발암성	발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1)으로 분류되는 물질(발암성이 유전독성 메카니즘으로 일어난다고 간주되는 경우) ○ 발암성(구분 1)으로 분류되는 물질 ○ 많은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용도(예, 소비자제품)로 사용되지 않고 인체 노출 빈도가 낮으며,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구분 2)으로 분류되지 않고, 반복투여(노출) 시험결과 증식 또는 선종양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는 물질

3.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수생생물독성	어류급성독성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 ○ 어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물벼룩급성독성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 ○ 물벼룩에 대한 만성 수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담수조류 성장저해	○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등 수생생태독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
	어류만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수생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수생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물벼룩만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수생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수생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육상생물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평형분배방법에 의한 토양생물 유해성평가가 가능한 물질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평형분배방법에 의한 토양생물 유해성평가가 가능한 물질
	육생식물 만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육상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토양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육상 생물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토양환경에 대한 위해도가 1미만)
침전물독성	활성슬러지호흡저해	○ 하수처리시설로 배출되지 않는 물질 ○ 이분해성물질로 시험에 사용된 농도가 하수처리 시설로의 예상 유입 농도의 범위 내인 물질 ○ 물에 극히 불용성 등 미생물 독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완화요건이 있는 물질
	저서생물만성독성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저서생물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평형분배방법에 의한 저서생물 유해성평가결과 위해도가 1미만)
분해성	이분해성	○ 무기물 ○ 고분자화합물
	본질적분해성	○ 무기물 ○ 이분해성 물질 ○ 모의 생분해성 시험자료(지표수, 토양, 수중 퇴적물)가 있는 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pH에 따른 가수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분해성 물질 ○ 물에 극히 불용성인 물질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분해산물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분해성 물질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물 ○ 이분해성 물질 ○ 고분자화합물 ○ 물에 극히 불용이고,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토양과 침전물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결과 화학물질의 환경거동 및 동태를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증거가 있는 물질(예, 환경 노출이 매우 낮아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고,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 또는 나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물질)
생물농축성	생물농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농축 가능성이 낮거나(예, $\log K_{ow} < 3$),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수생환경에 대한 노출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물질
흡착/탈착	흡착 및 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화학적 성질에 근거하여, 흡착성 가능성이 낮은 물질(예, 비이온성 물질로 $\log K_{ow} < 3$) ○ 물질 및 그 분해산물이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 ○ 신뢰성 있는 스크리닝 방법 등을 통해 흡착 및 탈착을 추정할 수 있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화학적 성질에 근거하여, 흡착성 가능성이 낮은 물질(예, 비이온성 물질로 $\log K_{ow} < 3$) ○ 물질 및 그 분해산물이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

시험항목	시험면제 조건
	○ 흡착 및 탈착에 관한 측정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고분자화합물

4.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다음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제1호 가목을 제외한 시험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시험결과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 안정하고, 영 제11호제1항제5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수평균분자량과 분자량 1,000 및 500 미만의 함량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나. 영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62호, 2018.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고시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고시의 제2장과 같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가목”을 “별표 7의 제5호 가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별표 7의 제6호 나목”을 “별표 7의 제5호 나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7의 제6호 다목”을 “별표 7의 제5호 다목”으로 한다.